

사회복지법인 더불어복지재단

2013년도 제 1 차 (정기)이사회

회 의록

1. 개회일시: 2013년 3월 16일(토) 오전 11시 ~ 13시

2. 장 소: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7(진인동) 더불어진인마을 강당

3. 참석자: 서정희, 박성주, 박문현, 이수근, 장두석, 최원희,
(이상 재적이사 7명 중 6명) 및 이수형, 정영우(이상 재직감사 2명 전원참석)

4. 안건

제1호: 법인사무국(발전기금특별회계 · 일반회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 재가복지 · 그룹홈), 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2012년도 법인 및 각 시설별 결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제2호: 2013년도 법인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의 건

제3호: 2013년도 더불어진인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제4호: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차 관리규정 개정의 건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배석한 법인 사무국장 한상인으로부터 재적이사 7명 중 6명과 재직감사 2명이 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정희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법인 더불어복지재단의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회의록 낭독 : 법인 사무국장이 2012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7. 경과보고: 법인 사무국장 한상인이 더불어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2012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한국필립모리스 지정 25인승 차량구입, 남구공동생활가정 소방시설 공사 기능보강사업 등) 경과를 보고하다.

8. 감사보고: 이수형 감사로부터 2012년도 법인 및 부설시설 각 사업별 업무집행내용 및 결산(안)을 감사한 결과 모든 집행내용과 회계절차가 적법하게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



라 모범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하다.

9. 심의 · 의결사항

1) 안건 제1호 (법인사무국(발전기금특별회계 · 일반회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 재가복지 · 그룹홈), 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2012년도 법인 및 각 시설별 결산(안) 심의 · 의결의 건) : ① 법인사무국 한상인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2011년과 2012년의 수지계산서를 토대로 법인 및 시설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결산내용과 사업실적 등 주요골자와 결산액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약 10분간 상세히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② 이수근이사가 재산조성비의 용도에 관해 질의하다. ③ 이에 한상인 사무국장이 재산조성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용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다 ④ 이수형감사가 약5분간 사업수익, 후원금 수입 등 세입내용과 이월금의 내역, 그 증감사유에 관해 부연설명을 하다. ⑤ 약 10분간 추가 질의응답 후 박성주 이사가 원안 의결을 동의하였고, 장두석이사가 제청하였으며 ⑥ 이에 참석한 이사 모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2012년도 법인사무국(발전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 재가복지 · 그룹홈), 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법인 및 각 시설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일치로 의결하다.

2) 안건 제2호 (2013년도 법인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의 건) : ① 한상인 법인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더불어복지재단의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의 계정과목(전출금(후원금))이 누락되어 부득이 예산성립전 누락된 계정과목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예산조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② 서정희 대표이사가 주무관청에서 후원금일 경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③ 한상인 사무국장이 전출금의 성격이 전출된 후에도 후원금의 성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연설명을 하다. ④ 이수근이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지원하였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었으니 더불어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복지재단의 후원금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피력하다. ⑤ 참석이사들 모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하다. ⑥ 이에 법인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의 건은 원안대로 참석이사 모두 전원일치로 의결하다.

3) 안건 제3호 (2013년도 더불어진인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 ① 한상인 법인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업에 따른 더불어진인마을의 개보수 공사(계단 누수에 따라 1층 생활관 계단을 테라스로 개보수) 및 지하저온창고 공사(김치 및 부식재료를 저장)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2012년도 이월금 확정에 따른 전입금 재편성에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② 이수근이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인력이 충분한지 질의하다. ③ 이에 서정희 대표이사가 시설별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그 수고가 많다고 답변하다. ④ 박문현 이사가 적절한 예산 재편성이라고 동의하였고, 이수근이사가 제청하다 ⑤ 이에 참석한 이사 모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2013년도 더불어진인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일치로 의결하다.



4) 안건 제4호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차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 의결의 건) : ① 서정희 대표이사가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물가상승에 따른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용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이야기하다. 또한 운영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의 실비 징수에 대하여도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② 이에 박성주 이사가 이용료의 수입에 대해서 왜 타 시설보다 적게 받는지 질의하다. ③ 서정희 대표이사가 우리 재단의 이용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은 보다 적게 부담하도록 해서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료 면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도 지원받고 이용료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조금 인상분이 인건비 인상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심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용료를 면제했으면 하나, 재정등 어려움이 있어 실비의 이용료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④ 이에 이수형 감사가 중복지원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에 중요한 문제이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비이용료 징수는 옳은 판단이라고 피력하다. ⑤ 박성주 이사가 보조금 인상을 대비 인건비 및 물가상승의 폭이 위낙 큰 만큼 주간보호 및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찬성의 뜻을 표하다. ⑥ 이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여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의 각 4차 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일치로 개정하다.

10. 폐회선언: 기타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 · 의결되었으므로 대표이사가 폐회를 선언하다.

기록자: 법인 총무과장

황보영숙



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함.

2013. 3. 16.

사회복지법인 더불어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정희



★ 이사 남상만 (인)

이사 박성주



이사 박문현



이사 이수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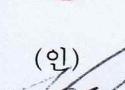
이사 장두석



이사 최원희



감사 이수형



감사 정영우



★ 표시 임원은 불참자임.